

2022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2022. 5. 20. 공고



차 례

1. 공급일정	7
2. 신청관련 문의	8
3. 공급현황	8
4. 신청자격	17
5. 입주자 선정	20
6.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24
7. 신청접수 일정	26
8. 신청접수 안내	27
9.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안내	30
10. 심사서류 제출안내	31
11.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34
12.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35
13. 유의사항	36
14. 단지별 상세주소 및 난방구조	38
15. 단지별 유의사항	41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43
[별표2]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44

2022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모집방법 안내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신청(<https://www.i-sh.co.kr/app>)이 원칙입니다.**
 - 본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은 인터넷/모바일청약이 원칙이므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 방문접수 시 과도한 청약신청 인원으로 인해 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청약 가능)를 활용하여 주시고 방문접수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격**

[선순위 조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 (1인 70%, 2인 60% 이하)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소득 조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 (1인 70%, 2인 60% 이하)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 (2인 80% 이하)

※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4.신청자격 참고

-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방법】

- 인터넷청약 기간 : 2022.05.30.(월) 10:00 ~ 2022.06.03.(금) 17:00
- ※ 2022.06.01.(수)는 공휴일로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접수 (www.i-sh.co.kr/app)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청약가능, PC 및 모바일 이용]

【방문접수 방법】

- 방문접수 기간 : 2022.06.02.(목) ~ 2022.06.03.(금) 10:00 ~ 17:00

2022.06.02. (목) :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은평구, 종랑구 내 단지]

2022.06.03. (금) :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의정부시 내 단지]

반드시 신청 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청약 장소 : **세텍(SETEC) 제3전시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 도보 5분)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방문접수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대상자들을 위한 신청대행이며,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상담서비스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지참하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등을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차** :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가능
 - **부양가족수** : (본인제외)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 접수 후, 유선 등의 방법으로 단지주택형가점사항 등 본인이 기입한 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장내 혼잡을 막기 위해 청약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차장은 대기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중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서 공급한 '2021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1.09.24.)'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금회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중전 순번(2021년 1차 국민임대 예비입주자)**은 **자동 삭제**처리 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은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타 사업주체(LH, GH 등)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 금회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3. 공급현황)**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단지 및 평형에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에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철거민 등 특별공급 신청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단지 공가 발생 시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에 따라 동일 임대주택 유형에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청약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상담내용,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5.20.(금)**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공고일 이후 영업일인('22.05.23.)부터 발급됨.]

※ 주택관리번호 : 2022-000302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아래 접수일정 또는 공고문 신청접수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기간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소득 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05.20. (금)	'22.05.30.(월) ~ '22.06.03.(금) 후순위 : 6.16.(목) ※ 06.01.(수) 공휴일 접수불가	'22.07.05. (화)	'22.07.13.(수) ~ '22.07.15.(금)	대상자 별도 통보	'22.11.11. (금)	'22.11.28. (월) ~ '22.12.02. (금)

※ 6월 1일은 공휴일로 인터넷 청약 관련 응대가 불가능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접수를 받지 않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접수일정	접수방법
○ 공급(일반, 주거약자) <u>선순위</u> - 50㎡미만(29㎡, 39㎡,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 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 - 50㎡이상(59㎡)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022.05.30.(월) 10:00 ~ 2022.06.03.(금) 17:00 ※ 06.01.(수) 공휴일 접수불가	인터넷청약 : www.i-sh.co.kr/app 방문청약 : 세텍(SETEC) 제3전시실 (학여울역 1번출구) : 신청자치구 별 접수일 상(하단참조)
○ 공급(일반, 주거약자) <u>후순위</u> - 50㎡미만(29㎡, 39㎡,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 - 50㎡이상(59㎡)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미 가입자 포함) (※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6.16.(목) 10:00 ~ 17:00	인터넷청약 : www.i-sh.co.kr/app

※ 방문접수 시 반드시 아래 신청단지 자치구의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6.02. (목) :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 2022.06.03. (금) :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의정부시 내 단지]

※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지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13시)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콜센터 ARS 조회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단지는 전자팸플릿[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급현황

■ 임대대상 및 금액 [재공급 단지]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기존 대기중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합 계			2,138	714	1,424										
강남구	세곡2지구 3단지 · 레미안포레	49㎡	일반	9	3	6		50,230	10,046	40,184	352,200	49.94	20.49	30.52	100.95	
			주거약자	2	1	1										
	세곡2지구 4단지 · 강남한양수자인	59㎡	일반	15	3	12	11*	61,010	12,202	48,808	406,300	59.97	21.81	38.54	120.32	
			주거약자	2	0	2										
	세곡2지구 6단지 · 강남한신휴플러스 6단지	39㎡	주거약자	4	3	1		38,130	7,626	30,504	277,800	39.86	17.24	28.8	85.9	
			일반	4	1	3										
	세곡지구 ·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2단지 · 세곡리엔파크 3,4단지 · 강남데시앙파크	39㎡	일반	5	1	4		28,320	5,664	22,656	240,100	39.95	18.37	32.31	90.63	
			주거약자	4	0	4		30,090	6,018	24,072	254,800					
		49㎡	일반	30	12	18	10*	42,300	8,460	33,840	313,600	49.97	14.77	23.54	88.28	
			주거약자	4	0	4		45,650	9,130	36,520	337,300					
59㎡	일반	12	3	9	19*	50,130	10,026	40,104	355,300	59.97	26.91	48.5	135.38			
						54,620	10,924	43,696	373,000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 강일리버파크 1~10단지	39㎡	일반	97	45	52		27,990	5,598	22,392	217,700	39.90	19.71	22.20	81.81	
			주거약자	12	6	6										
	49㎡	일반	25	0	25	14	38,110	7,622	30,488	252,700	49.90	23.55	25.16	98.61		
		주거약자	3	0	3										8*	
	59㎡	일반	80	37	43		45,650	9,130	36,520	294,500	59.87	22.718	27.282	109.87		
		주거약자	6	1	5		58,800	11,760	47,040	339,300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기존 대기중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계
강동구	강일2지구 · 고덕리엔파크1~3단지	59㎡	일반	75	37	38		47,270 ~ 48,010	9,454 ~ 9,602	37,816 ~ 38,408	325,800 ~ 333,600	59.83	20.36	33.69	113.88	
	고덕강일2지구 · 강동리버스트 4,6,7,8단지	29㎡	주거약자	2	1	1		16,970 ~ 17,610	3,394 ~ 3,522	13,576 ~ 14,088	167,100 ~ 174,800	29.44	14.16	21.51	65.11	
		39㎡	주거약자	4	2	2		32,900 ~ 33,970	6,580 ~ 6,794	26,320 ~ 27,176	230,600 ~ 242,100	39.65	19.09	28.98	87.72	
		49㎡	주거약자	4	1	3		49,890 ~ 50,070	9,978 ~ 10,014	39,912 ~ 40,056	302,600 ~ 305,400	49.86	19.5	30.23	99.59	
	고덕강일3지구 · 강동리엔파크 9,14단지	29㎡	일반	6	0	6		16,940 ~ 18,900	3,388 ~ 3,780	13,552 ~ 15,120	165,100 ~ 185,600	29.03	14.36	18.65	62.04	
		49㎡	주거약자	4	2	2		18,900 ~ 18,900	3,780 ~ 3,780	15,120 ~ 15,120	185,600 ~ 185,600	29.03	14.36	18.65	62.04	
		49㎡	일반	4	0	4		49,790	9,958	39,832	301,400	49.67	22.73	31.91	104.31	
강서구	마곡지구 · 마곡엠벨리 1~15단지 (9단지 제외)	49㎡	주거약자	4	0	4	1*	51,000 ~ 59,280	10,200 ~ 11,856	40,800 ~ 47,424	348,200 ~ 385,600	49.87	18.51	35.65	104.03	
		59㎡	일반	70	25	45		52,890 ~ 68,980	10,578 ~ 13,796	42,312 ~ 55,184	345,100 ~ 425,900	59.69	22.74	45.18	127.61	
	마곡지구 9단지 · 마곡엠벨리 9단지	49㎡	일반	10	0	10		53,160	10,632	42,528	292,700	49.53	20.10	39.19	108.82	
		49㎡	주거약자	4	0	4		53,160	10,632	42,528	292,700	49.53	20.10	39.19	108.82	
	발산지구 · 마곡수명산파크 1~7단지	39㎡	일반	40	0	40	74*	22,470	4,494	17,976	203,100	39.80	14.489	17.344	71.63	
		49㎡	일반	60	14	46		33,680 ~ 35,760	6,736 ~ 7,152	26,944 ~ 28,608	240,300 ~ 262,800	49.97	14.77	23.54	88.28	
		59㎡	일반	46	22	24		36,690 ~ 39,630	7,338 ~ 7,926	29,352 ~ 31,704	268,800 ~ 294,900	59.76	17.264	23.428	100.45	
구로구	천왕지구 · 천왕이펜하우스 1~6단지	39㎡	일반	26	10	16		26,360 ~ 32,530	5,272 ~ 6,506	21,088 ~ 26,024	229,000 ~ 263,200	39.45	18.87	31.57	89.89	
		39㎡	주거약자	2	1	1		32,530	6,506	26,024	263,200	39.45	18.87	31.57	89.89	
		49㎡	일반	72	30	42		40,070 ~ 45,030	8,014 ~ 9,006	32,056 ~ 36,024	298,300 ~ 320,700	49.58	23.92	34.20	107.70	
		49㎡	주거약자	4	0	4	2*	45,030	9,006	36,024	320,700	49.58	23.92	34.20	107.70	
			59㎡	일반	40	0	40	95*	47,580 ~ 54,940	9,516 ~ 10,988	38,064 ~ 43,952	336,100 ~ 361,300	59.95	25.13	47.97	133.05
	천왕2지구 · 천왕연지타운 1,2단지	39㎡	일반	5	0	5	4*	38,080	7,616	30,464	268,600	39.97	16.68	33.06	89.71	
		49㎡	일반	40	12	28		49,860 ~ 56,750	9,972 ~ 11,350	39,888 ~ 45,400	317,700 ~ 341,700	49.34	20.29	40.79	110.42	
		59㎡	일반	30	6	24		59,710 ~ 70,080	11,942 ~ 14,016	47,768 ~ 56,064	362,900 ~ 409,500	59.97	19.82	40.01	119.8	
	향동지구 · 향동하버라인 2,3,4,8단지	39㎡	일반	18	7	11		31,570 ~ 34,740	6,314 ~ 6,948	25,256 ~ 27,792	232,600 ~ 247,700	39.91	18.18	28.66	86.75	
		39㎡	주거약자	2	1	1		34,740	6,948	27,792	247,700	39.91	18.18	28.66	86.75	
49㎡		주거약자	2	1	1		47,350 ~ 53,510	9,470 ~ 10,702	37,880 ~ 42,808	295,700 ~ 322,400	49.86	21.89	35.8	107.55		
		59㎡	일반	20	8	12		54,770 ~ 60,900	10,954 ~ 12,180	43,816 ~ 48,720	346,400 ~ 364,500	59.86	25.21	42.98	128.05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기존 대기중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월 임대료 (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노원구	중계센트럴파크	49㎡	일반	4	0	4	11*	58,530	11,706	46,824	345,900	49.90	22.68	33.22	105.8	
	상계장암지구(3,4단지) · 수락리버시티3,4단지	39㎡	일반	36	10	26		27,210	5,442	21,768	212,800	39.81	12.73	18.37	70.91	
마포구	상암2지구 · 상암월드컵파크 9~12단지	39㎡	일반	21	9	12		29,520	5,904	23,616	235,200	39.33	14.25	24.27	77.85	
		49㎡	일반	33	0	33		43,450 ~ 49,810	8,690 ~ 9,962	34,760 ~ 39,848	301,000 ~ 309,700	49.58	17.96	31.20	98.74	
			주거약자	3	0	3										
	59㎡	일반	22	0	22	44*	52,270 ~ 59,670	10,454 ~ 11,934	41,816 ~ 47,736	346,600 ~ 353,900	59.73	21.96	38.56	120.25		
	상암3~8단지 · 상암월드컵8단지	39㎡	일반	12	0	12	1*	26,390	5,278	21,112	232,700	39.95	15.13	31.06	86.14	
49㎡		일반	35	2	33		39,280	7,856	31,424	282,500	49.94	19.05	38.84	107.83		
서초구	서초포레스타 2단지	39㎡	일반	5	0	5	2*	32,150	6,430	25,720	276,500	39.43	18.58	31.26	89.27	
		49㎡	일반	31	4	27		48,670	9,734	38,936	359,300	49.33	23.40	39.10	111.83	
	주거약자		2	1	1											
	서초포레스타 6단지	49㎡	일반	6	0	6	2*	60,720	12,144	48,576	390,600	49.34	21.43	40.87	111.64	
	우면2지구 · 서초네이처힐 2~7단지	49㎡	일반	30	5	25		40,440 ~ 48,220	8,088 ~ 9,644	32,352 ~ 38,576	285,800 ~ 323,100	49.90	15.22	27.10	92.22	
		59㎡	일반	58	29	29	8*	48,080 ~ 66,560	9,616 ~ 13,312	38,464 ~ 53,248	324,400 ~ 371,700	59.99	18.73	44.01	122.73	
우면2지구 다세대주택 · 서초네이처힐가든	59㎡	일반	20	13	7		74,180	14,836	59,344	415,200	59.79	22.93	47.33	130.05		
성북구	장월1 · 장월에스에이치빌 1단지	39㎡	일반	7	2	5		13,290	2,658	10,632	200,100	39.34	14.055	29.813	83.208	
		49㎡	일반	3	0	3	3*	17,920	3,584	14,336	242,800	49.33	17.63	37.39	104.35	
송파구	마천지구 · 송파파크데일 1,2단지	39㎡	일반	4	0	4	2*	28,230 ~ 29,070	5,646 ~ 5,814	22,584 ~ 23,256	228,100 ~ 233,900	39.96	12.37	21.74	74.07	
		49㎡	주거약자	8	4	4		41,400 ~ 42,500	8,280 ~ 8,500	33,120 ~ 34,000	293,100 ~ 299,500	49.63	15.30	27.00	91.93	
			일반	18	5	13	8*	49,330 ~ 51,120	9,866 ~ 10,224	39,464 ~ 40,896	332,700 ~ 343,800	59.91	18.71	32.59	111.21	
	오금지구 · 송파레미니스 1,2단지	39㎡	일반	34	8	26		35,360 ~ 35,430	7,072 ~ 7,086	28,288 ~ 28,344	226,000 ~ 234,600	39.67	18.76	27.35	85.78	
			주거약자	2	1	1										
	49㎡	일반	5	0	5	3*	53,250	10,650	42,600	298,600	49.55	23.62	27.35	100.52		
		일반	5	1	4		39,030	7,806	31,224	249,300	39.76	18.34	32.49	90.59		
	위례포레샤인 13단지	59㎡	일반	10	3	7		69,070	13,814	55,256	369,500	59.31	26.81	48.46	134.58	
		39㎡	일반	20	10	10		39,060	7,812	31,248	239,000	39.79	18.47	27.70	85.96	
주거약자	5		3	2												
일반	46		31	15												
49㎡	주거약자	3	1	2		58,370	11,674	46,696	304,800	49.48	22.05	34.46	105.99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기존 대기중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월 임대료 (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송파구	장지지구 · 송파파인타운 2~11단지	39㎡	일반	36	0	36	38*	26,220 ~ 27,150	5,244 ~ 5,430	20,976 ~ 21,720	220,500 ~ 225,300	39,45	18,87	31,57	89,89	
		49㎡	일반	80	36	44		35,810 ~ 43,220	7,162 ~ 8,644	28,648 ~ 34,576	253,100 ~ 277,400	49,77	17,329	28,235	95,334	
		59㎡	일반	62	17	45	20*	45,450 ~ 55,990	9,090 ~ 11,198	36,360 ~ 44,792	307,100 ~ 338,600	59,67	17,605	27,911	105,186	
양천구	신정3지구 · 신정이펜하우스 1~5단지	49㎡	일반	64	34	30		36,740 ~ 45,720	7,348 ~ 9,144	29,392 ~ 36,576	278,500 ~ 321,600	49,92	14,85	30,84	95,61	
			주거약자	6	3	3										
		59㎡	일반	48	19	29	4*	43,220 ~ 53,760	8,644 ~ 10,752	34,576 ~ 43,008	315,400 ~ 361,300	59,83	18,38	36,96	115,17	
			주거약자	6	3	3										
	신정4지구 보금자리주택 · 신정숲속마을	39㎡	일반	30	15	15		25,970	5,194	20,776	216,900	39,99	19,78	23,90	83,67	
			주거약자	2	1	1										
은평구	은평1지구 · 상림마을6-1~ 상림마을8-3단지	39㎡	일반	52	21	31		27,360	5,472	21,888	200,800	39,83	18,96	27,51	86,30	
		49㎡	일반	23	5	18		42,100	8,420	33,680	252,400	49,32	23,466	34,068	106,854	
		59㎡	일반	44	19	25		56,890 ~ 73,220	11,378 ~ 14,644	45,512 ~ 58,576	345,200 ~ 419,200	59,8	29,756	41,308	130,864	
	은평2지구 · 박석고개1-1,1-3단지 · 마고정3-1~3-3단지 · 우물골2-1,2-2단지	39㎡	일반	10	0	10	30*	26,720 ~ 27,540	5,344 ~ 5,508	21,376 ~ 22,032	202,000 ~ 207,600	39,72	13,20	20,87	73,79	
		49㎡	일반	6	0	6	8*	41,110 ~ 42,350	8,222 ~ 8,470	32,888 ~ 33,880	253,800 ~ 274,700	49,74	16,644	28,494	94,878	
		59㎡	일반	12	0	12	8*	53,130 ~ 63,580	10,626 ~ 12,716	42,504 ~ 50,864	339,500 ~ 383,700	59,85	19,695	31,446	110,991	
	은평3지구 · 구파발 9-1 · 구파발 10-3단지	59㎡	일반	20	0	20	25*	51,510 ~ 56,270	10,302 ~ 11,254	41,208 ~ 45,016	330,300 ~ 346,500	59,91	17,565	26,981	104,456	
		신내데시앙	59㎡	일반	34	6	28	38*	46,570	9,314	37,256	299,400	59,99	21,735	23,154	104,879
	신내3지구 · 신내우디안1단지 · 신내데시앙포레		39㎡	일반	28	8	20		29,710 ~ 31,040	5,942 ~ 6,208	23,768 ~ 24,832	239,000 ~ 249,600	39,93	17,24	24,28	81,45
			49㎡	일반	80	46	34		44,550 ~ 45,320	8,910 ~ 9,064	35,640 ~ 36,256	308,300 ~ 321,100	49,77	20,87	30,26	100,90
59㎡				일반	55	29	26		53,660 ~ 53,960	10,732 ~ 10,792	42,928 ~ 43,168	354,700 ~ 366,000	59,6	25,55	36,24	121,39
의정부시	상계잠암지구(1,2단지) · 수락리버시티 1,2단지	39㎡	일반	3	0	3	2*	24,920	4,984	19,936	194,800	39,81	13,46	17,63	70,9	
		49㎡	일반	22	10	12		36,350	7,270	29,080	248,700	49,93	16,32	22,10	88,35	
		59㎡	일반	20	4	16	2*	50,500 ~ 51,100	10,100 ~ 10,220	40,400 ~ 40,880	323,000 ~ 324,400	59,9	16,37	28,46	104,73	

- ※ 기존 대기중 예비자(*) : 2020년 3차 국민임대 예비자로 '22.07.27. 예비자격 만료 예정입니다.
- ※ 본 모집공고 공급단지들의 입주시작 예정월은 2022년 12월 이후입니다.
- ※ 예비입주자 선발인원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 퇴거 등 공사 상황 변동에 따라 명시된 인원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기중 예비입주자가 존재하는 단지는 해당 예비자 순번의 다음번호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의 공급단지는 재공급단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 공가 입주자는 본 공고 일정에 따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당첨세대의 미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를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급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지구 또는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동일단지 내 동일한 신청유형의 임대가격은 동일합니다. 단, 복층이 혼재되어있는 단지(은평1지구 등)의 경우 별도 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 및 동호가 결정되고 배정된 단지에 따라 상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세곡지구,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3지구, 마곡지구, 발산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향동지구, 상암2지구, 상계장암지구3,4단지, 우면2지구, 마천지구, 오금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신내3지구, 상계장암지구1,2단지는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와 동호가 결정됩니다.**
-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의정부시에 위치해 있는 임대주택으로 당첨 시 의정부시로 전입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평면유형에 따라 방개수 및 세대구조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들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스위치 낮게 설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1~3층)에 건립되어 있으며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주택 중 서초포레스타 2단지 212동은 해당 동이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2층까지, 세곡지구 내 세곡리엔파크 4단지는 해당 단지가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3층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구분의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현장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라며 임대주택 위치는 14. 단지별 상세주소 및 난방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금액 전환안내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기존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강남구	세곡2지구 3단지 · 래미안포레	49㎡	50,230	352,200	(+)	88,090	140,800
					(-)	20,090	414,900
	세곡2지구 4단지 · 강남한양수자인	59㎡	61,010	406,300	(+)	104,670	162,500
					(-)	24,400	482,500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강남구	세곡2지구 6단지 · 강남한신휴플러스6단지	39㎡	38,130	277,800	(+)	67,980	111,100
					(-)	15,250	325,400
		49㎡	58,590	373,500	(+)	98,720	149,400
					(-)	23,430	446,700
	세곡지구 · 강남신동아파밀리에1,2단지 · 세곡리엔파크3,4단지 · 강남대시앙파크	39㎡	28,320 ~ 30,090	240,100 ~ 254,800	(+)	54,120~57,470	96,000~101,900
					(-)	11,320~12,030	275,500~292,400
		49㎡	42,300 ~ 45,650	313,600 ~ 337,300	(+)	76,000~81,890	125,400~134,900
					(-)	16,920~18,260	366,400~394,300
		59㎡	50,130 ~ 54,620	355,300 ~ 373,000	(+)	88,310~94,360	142,100~149,200
					(-)	20,050~21,840	417,900~438,900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 강일리버파크1~10단지	39㎡	27,990	217,700	(+)	51,390	87,000
					(-)	11,190	252,700
		49㎡	38,110	252,700	(+)	65,280	101,000
					(-)	15,240	300,300
		59㎡	45,650 ~ 58,800	294,500 ~ 339,300	(+)	77,290~95,260	117,800~135,700
					(-)	18,260~23,520	351,500~412,800
	강일2지구 · 고덕리엔파크1~3단지	59㎡	47,270 ~ 48,010	325,800 ~ 333,600	(+)	83,020~83,280	130,300~133,400
					(-)	18,900~19,200	385,800~392,700
	고덕강일2지구 · 강동리버스트4,6,7,8단지	29㎡	16,970 ~ 17,610	167,100 ~ 174,800	(+)	34,930~36,380	66,800~69,900
					(-)	6,780~7,040	188,300~196,800
		39㎡	32,900 ~ 33,970	230,600 ~ 242,100	(+)	57,810~59,990	92,200~96,800
					(-)	13,160~13,580	271,800~284,500
		49㎡	49,890 ~ 50,070	302,600 ~ 305,400	(+)	82,590~82,790	121,000~122,100
					(-)	19,950~20,020	365,200~367,700
	고덕강일3지구 · 강동리엔파크9,14단지	29㎡	16,940 ~ 18,900	165,100 ~ 185,600	(+)	34,680~38,850	66,000~74,200
					(-)	6,770~7,560	186,200~209,200
49㎡		49,790	301,400	(+)	82,190	120,500	
				(-)	19,910	363,600	
강서구	마곡지구 · 마곡엠밸리1~15단지 (9단지 제외)	49㎡	51,000 ~ 59,280	348,200 ~ 385,600	(+)	88,820~100,720	139,200~154,200
					(-)	20,400~23,710	412,400~459,700
		59㎡	52,890 ~ 68,980	345,100 ~ 425,900	(+)	92,680~114,630	138,000~170,300
					(-)	21,150~27,590	419,500~511,900
	마곡지구 9단지 · 마곡엠밸리 9단지	49㎡	53,160	292,700	(+)	84,620	117,000
					(-)	21,260	359,100
	발산지구 · 마곡수명산파크1~7단지	39㎡	22,470	203,100	(+)	44,300	81,200
					(-)	8,980	231,200
		49㎡	33,680 ~ 35,760	240,300 ~ 262,800	(+)	59,500~64,000	96,100~105,100
					(-)	13,470~14,300	282,400~307,500
		59㎡	36,690 ~ 39,630	268,800 ~ 294,900	(+)	65,570~71,330	107,500~117,900
					(-)	14,670~15,850	314,600~344,400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구로구	천왕지구 · 천왕이펜하우스1~6단지	39㎡	26,360	229,000	(+)	50,960~60,820	91,600~105,200
			~ 32,530	~ 263,200	(-)	10,540~13,010	261,900~303,800
		49㎡	40,070	298,300	(+)	72,120~78,710	119,300~128,200
			~ 45,030	~ 320,700	(-)	16,020~18,010	348,400~375,700
		59㎡	47,580	336,100	(+)	83,940~93,760	134,400~144,500
			~ 54,940	~ 361,300	(-)	19,030~21,970	395,800~429,900
	천왕2지구 · 천왕연지타운1,2단지	39㎡	38,080	268,600	(+)	66,950	107,400
					(-)	15,230	316,200
		49㎡	49,860	317,700	(+)	84,010~93,480	127,000~136,600
			~ 56,750	~ 341,700	(-)	19,940~22,700	380,000~412,600
		59㎡	59,710	362,900	(+)	98,710~114,080	145,100~163,800
			~ 70,080	~ 409,500	(-)	23,880~28,030	437,500~497,100
	항동지구 · 항동하버라인2,3,4,8단지	39㎡	31,570	232,600	(+)	56,570~61,370	93,000~99,000
			~ 34,740	~ 247,700	(-)	12,620~13,890	272,000~291,100
		49㎡	47,350	295,700	(+)	79,140~88,160	118,200~128,900
~ 53,510			~ 322,400	(-)	18,940~21,400	354,800~389,200	
59㎡		54,770	346,400	(+)	92,000~99,980	138,500~145,800	
		~ 60,900	~ 364,500	(-)	21,900~24,360	414,800~440,400	
노원구	중계센트럴파크	49㎡	58,530	345,900	(+)	95,710	138,300
					(-)	23,410	419,000
	상계장암지구(3,4단지) · 수락리버시티3,4단지	39㎡	27,210	212,800	(+)	50,080	85,100
					(-)	10,880	246,800
마포구	상암2지구 · 상암월드컵파크9~12단지	39㎡	29,520	235,200	(+)	54,800	94,000
					(-)	11,800	272,100
		49㎡	43,450	301,000	(+)	75,790~83,100	120,400~123,800
			~ 49,810	~ 309,700	(-)	17,380~19,920	355,300~371,900
		59㎡	52,270	346,600	(+)	89,520~97,710	138,600~141,500
			~ 59,670	~ 353,900	(-)	20,900~23,860	411,900~428,500
	상암3-8단지 · 상암월드컵8단지	39㎡	26,390	232,700	(+)	51,410	93,000
					(-)	10,550	265,700
		49㎡	39,280	282,500	(+)	69,630	113,000
					(-)	15,710	331,600
서초구	서초포레스타 2단지	39㎡	32,150	276,500	(+)	61,860	110,600
					(-)	12,860	316,600
		49㎡	48,670	359,300	(+)	87,280	143,700
					(-)	19,460	420,100
	서초포레스타 6단지	49㎡	60,720	390,600	(+)	102,700	156,200
					(-)	24,280	466,500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서초구	우면2지구 · 서초네이처힐2~7단지	49㎡	40,440 ~ 48,220	285,800 ~ 323,100	(+)	71,150~82,940	114,300~129,200	
		59㎡	48,080 ~ 66,560	324,400 ~ 371,700	(-)	16,170~19,280	336,300~383,300	
	우면2지구 다세대주택 · 서초네이처힐가든	59㎡	74,180	415,200	(+)	118,810	166,000	
					(-)	29,670	507,900	
	성북구	장월1 · 장월에스에이치빌1단지	39㎡	13,290	200,100	(+)	34,800	80,000
			49㎡	17,920	242,800	(-)	5,310	216,700
					(+)	44,010	97,100	
					(-)	7,160	265,200	
송파구	마천지구 · 송파파크데일1,2단지	39㎡	28,230 ~ 29,070	228,100 ~ 233,900	(+)	52,740~54,210	91,200~93,500	
		49㎡	41,400 ~ 42,500	293,100 ~ 299,500	(-)	11,290~11,620	263,300~270,200	
		59㎡	49,330 ~ 51,120	332,700 ~ 343,800	(+)	72,900~74,680	117,200~119,800	
					(-)	16,560~17,000	344,800~352,600	
	오금지구 · 송파레미니스1,2단지	39㎡	35,360 ~ 35,430	226,000 ~ 234,600	(+)	85,090~88,060	133,000~137,500	
		49㎡	53,250	298,600	(-)	19,730~20,440	394,300~407,700	
	위례포레샤인 13단지	39㎡	39,030	249,300	(+)	59,710~60,570	90,400~93,800	
					(-)	14,140~14,170	270,200~278,800	
		59㎡	69,070	369,500	(+)	85,340	119,400	
					(-)	21,300	365,100	
	위례포레샤인 23단지	39㎡	39,060	239,000	(+)	65,820	99,700	
					(-)	15,610	298,000	
		49㎡	58,370	304,800	(+)	108,770	147,800	
					(-)	27,620	455,800	
	장지지구 · 송파파인타운2~11단지	39㎡	26,220 ~ 27,150	220,500 ~ 225,300	(+)	64,740	95,600	
		49㎡	35,810 ~ 43,220	253,100 ~ 277,400	(-)	15,620	287,800	
		59㎡	45,450 ~ 55,990	307,100 ~ 338,600	(+)	91,120	121,900	
					(-)	23,340	377,700	
						(+)	49,910~51,360	88,200~90,100
						(-)	10,480~10,860	253,200~259,200
양천구	신정3지구 · 신정이팬하우스1~5단지	49㎡	36,740 ~ 45,720	278,500 ~ 321,600	(+)	66,660~80,280	111,400~128,600	
		59㎡	43,220 ~ 53,760	315,400 ~ 361,300	(-)	14,690~18,280	324,400~378,700	
	신정4지구 보금자리주택 · 신정숲속마을	39㎡	25,970	216,900	(+)	77,520~92,580	126,100~144,500	
					(-)	17,280~21,500	369,900~428,500	
					(+)	49,280	86,700	
					(-)	10,380	249,300	

자치구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은평구	은평1지구 · 상림마을6-1~ 상림마을8-3단지	39㎡	27,360	200,800	(+)	48,940	80,300
					(-)	10,940	235,000
		49㎡	42,100	252,400	(+)	69,230	100,900
					(-)	16,840	305,000
		59㎡	56,890 ~ 73,220	345,200 ~ 419,200	(+)	94,000~118,280	138,000~167,600
					(-)	22,750~29,280	416,300~510,700
	은평2지구 · 박석고개1-1, 1-3단지 · 마고정3-1~3-3단지 · 우물골2-1, 2-2단지	39㎡	26,720 ~ 27,540	202,000 ~ 207,600	(+)	49,030~49,240	80,800~83,000
					(-)	10,680~11,010	236,400~241,000
		49㎡	41,110 ~ 42,350	253,800 ~ 274,700	(+)	69,620~70,640	101,500~109,800
					(-)	16,440~16,940	306,700~326,000
		59㎡	53,130 ~ 63,580	339,500 ~ 383,700	(+)	89,610~104,820	135,800~153,400
					(-)	21,250~25,430	405,900~463,100
은평3지구 · 구파발 9-1, 10-3단지	59㎡	51,510 ~ 56,270	330,300 ~ 346,500	(+)	87,000~93,500	132,100~138,600	
				(-)	20,600~22,500	394,600~416,800	
중랑구	신내데시앙	59㎡	46,570	299,400	(+)	78,750	119,700
					(-)	18,620	357,600
	신내3지구 · 신내우디안1단지 · 신내데시앙포레	39㎡	29,710 ~ 31,040	239,000 ~ 249,600	(+)	55,390~57,860	95,600~99,800
					(-)	11,880~12,410	276,100~288,400
		49㎡	44,550 ~ 45,320	308,300 ~ 321,100	(+)	77,680~79,830	123,300~128,400
					(-)	17,820~18,120	363,900~377,700
		59㎡	53,660 ~ 53,960	354,700 ~ 366,000	(+)	91,790~93,290	141,800~146,400
					(-)	21,460~21,580	421,700~433,400
의정부시	상계장암지구(1,2단지) · 수락리버시티1, 2단지	39㎡	24,920	194,800	(+)	45,850	77,900
					(-)	9,960	225,900
		49㎡	36,350	248,700	(+)	63,090	99,400
					(-)	14,540	294,100
		59㎡	50,500 ~ 51,100	323,000 ~ 324,400	(+)	85,370~85,810	129,200~129,700
					(-)	20,200~20,440	386,800~387,500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 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 위 전환 이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의 임대조건 이율에 따라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4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2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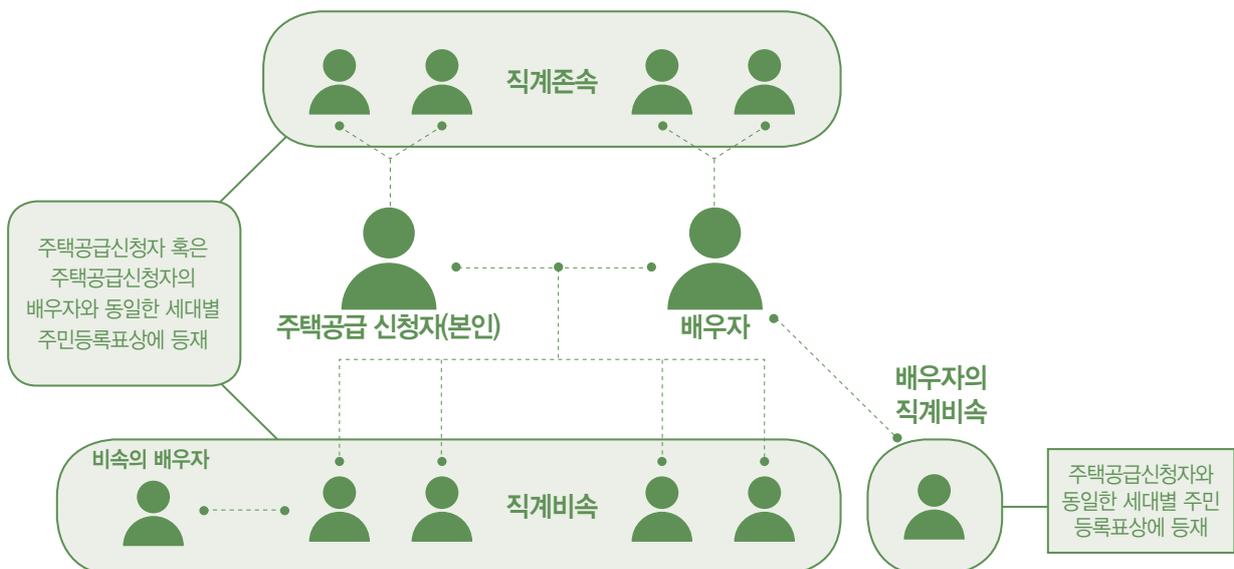
- 상계장암지구 1,2단지: 서울특별시 외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가능하며, 상계장암지구 3,4단지는 서울특별시 외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외국인인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기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기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미만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는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입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②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제한 기준은 재계약 시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전용면적 4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자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의 2인 이상의 세대구성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사람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60㎡이하 국민임대주택(29㎡형, 39㎡형, 49㎡형, 59㎡형)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1인가구 (+20%)	2인가구 (+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2,890,90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참고사항	※ 7인가구(5,763,505원 이하), 8인가구(6,081,132원 이하) ※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태아(수)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소득항목별 세부 조사항목은 공고문 [별표2] 참고					
자 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부채는 자산에서 감액)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위 월평균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 가구는 20%p 가산, 2인은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5 입주자 선정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영업일(2022.05.23.)부터 발급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점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주택관리번호 : 2022-000302

가. 일반공급(일반)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29㎡, 39㎡, 49㎡)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가구원수</th> <th style="width: 12.5%;">1인가구 (+20%)</th> <th style="width: 12.5%;">2인가구 (+10%)</th> <th style="width: 12.5%;">3인가구</th> <th style="width: 12.5%;">4인가구</th> <th style="width: 12.5%;">5인가구</th> <th style="width: 12.5%;">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td> <td style="text-align: center;">2,248,479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906,622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209,283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0,405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663,036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889,913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 style="text-align: center;">2,890,902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875,496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492,996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40,566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128,250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445,878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1인가구 (+20%)	2인가구 (+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248,479원 이하	2,906,622원 이하	3,209,283원 이하	3,600,405원 이하	3,663,036원 이하	3,889,91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890,90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0%)	2인가구 (+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248,479원 이하	2,906,622원 이하	3,209,283원 이하	3,600,405원 이하	3,663,036원 이하	3,889,91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890,90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지구 및 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60%;">• 세곡2지구 3,6단지, 세곡지구</td> <td>: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td> </tr> <tr> <td>• 강동권역 강일지구, 고덕강일3지구</td> <td>: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td> </tr> <tr> <td>• 마곡지구 9단지, 발산지구</td> <td>: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td> </tr> <tr> <td>• 천왕지구, 천왕2지구, 향동지구</td> <td>: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td> </tr> <tr> <td>• 중계센트럴파크</td> <td>: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랑구</td> </tr> <tr> <td>• 상계장암지구(3,4단지)</td> <td>: [노원구, 의정부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랑구</td> </tr> <tr> <td>• 상암2지구, 상암3-8단지</td> <td>: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td> </tr> <tr> <td>• 서초포레스타 2,6단지, 우면2지구</td> <td>: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td> </tr> <tr> <td>• 장월1</td> <td>: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종로구, 종랑구</td> </tr> <tr> <td>• 오금지구, 장지지구, 마천지구, 위례포레샤인 13,23단지</td> <td>: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td> </tr> <tr> <td>• 신정3지구, 신정4지구 보금자리주택</td> <td>: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td> </tr> <tr> <td>• 은평 1,2지구</td> <td>: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td> </tr> <tr> <td>• 신내3지구</td> <td>: [종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td> </tr> <tr> <td>• 상계장암지구(1,2단지)</td> <td>: [노원구, 의정부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랑구,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td> </tr> </tbody> </table>	• 세곡2지구 3,6단지, 세곡지구	: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 강동권역 강일지구, 고덕강일3지구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마곡지구 9단지, 발산지구	: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 천왕지구, 천왕2지구, 향동지구	: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중계센트럴파크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랑구	• 상계장암지구(3,4단지)	: [노원구, 의정부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랑구	• 상암2지구, 상암3-8단지	: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 서초포레스타 2,6단지, 우면2지구	: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 장월1	: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종로구, 종랑구	• 오금지구, 장지지구, 마천지구, 위례포레샤인 13,23단지	: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 신정3지구, 신정4지구 보금자리주택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 은평 1,2지구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 신내3지구	: [종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 상계장암지구(1,2단지)	: [노원구, 의정부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랑구,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 세곡2지구 3,6단지, 세곡지구	: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 강동권역 강일지구, 고덕강일3지구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마곡지구 9단지, 발산지구	: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 천왕지구, 천왕2지구, 향동지구	: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중계센트럴파크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랑구																												
• 상계장암지구(3,4단지)	: [노원구, 의정부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랑구																												
• 상암2지구, 상암3-8단지	: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 서초포레스타 2,6단지, 우면2지구	: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 장월1	: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종로구, 종랑구																												
• 오금지구, 장지지구, 마천지구, 위례포레샤인 13,23단지	: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 신정3지구, 신정4지구 보금자리주택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 은평 1,2지구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 신내3지구	: [종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 상계장암지구(1,2단지)	: [노원구, 의정부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랑구,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②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의함											
■ 전용면적 50㎡이상 (59㎡)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2인 가구 +10%p 가산)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2인가구 (+10%)</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3,875,496원 이하</td> <td>4,492,996원 이하</td> <td>5,040,566원 이하</td> <td>5,128,250원 이하</td> <td>5,445,878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2인가구 (+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875,49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가구원수	2인가구 (+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875,49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의함											

※ 일반공급(일반)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비고
전용면적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이하) → 거주지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 배점합산	배점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
전용면적 50㎡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2인 80% 이하) → 주택청약 종합저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 배점합산	

나. 일반공급(주거약자)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공통 신청자격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1957.05.20.이전 출생, 당일포함)]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①~⑥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 가능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50㎡ 미만 (29㎡, 39㎡, 49㎡)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가구 (+20%)</th> <th>2인가구 (+10%)</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td> <td>2,248,479원 이하</td> <td>2,906,622원 이하</td> <td>3,209,283원 이하</td> <td>3,600,405원 이하</td> <td>3,663,036원 이하</td> <td>3,889,913원 이하</td> </tr>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2,890,902원 이하</td> <td>3,875,496원 이하</td> <td>4,492,996원 이하</td> <td>5,040,566원 이하</td> <td>5,128,250원 이하</td> <td>5,445,878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1인가구 (+20%)	2인가구 (+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248,479원 이하	2,906,622원 이하	3,209,283원 이하	3,600,405원 이하	3,663,036원 이하	3,889,91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890,90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	1인가구 (+20%)	2인가구 (+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248,479원 이하	2,906,622원 이하	3,209,283원 이하	3,600,405원 이하	3,663,036원 이하	3,889,913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890,90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 <td>• 세곡2지구 3,6단지, 세곡지구</td> <td>: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td> </tr> <tr> <td>• 강동권역 강일지구, 고덕강일2,3지구</td> <td>: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td> </tr> <tr> <td>• 마곡지구, 마곡지구9단지</td> <td>: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td> </tr> <tr> <td>• 천왕지구, 향동지구</td> <td>: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td> </tr> <tr> <td>• 상암2지구</td> <td>: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td> </tr> <tr> <td>• 서초포레스타 2단지</td> <td>: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td> </tr> <tr> <td>• 마천지구, 오금지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td> <td>: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td> </tr> <tr> <td>• 신정3지구, 신정4지구 보금자리주택</td> <td>: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td> </tr> <tr> <td>• 신내3지구</td> <td>: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td> </tr> </tbody> </table>	• 세곡2지구 3,6단지, 세곡지구	: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 강동권역 강일지구, 고덕강일2,3지구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마곡지구, 마곡지구9단지	: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 천왕지구, 향동지구	: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상암2지구	: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 서초포레스타 2단지	: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 마천지구, 오금지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 신정3지구, 신정4지구 보금자리주택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 신내3지구	: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 세곡2지구 3,6단지, 세곡지구	: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 강동권역 강일지구, 고덕강일2,3지구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마곡지구, 마곡지구9단지	: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 천왕지구, 향동지구	: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상암2지구	: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 서초포레스타 2단지	: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 마천지구, 오금지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 신정3지구, 신정4지구 보금자리주택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 신내3지구	: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②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아래 <u>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u> 의함																						
■ 전용면적 50㎡ 이상 (59㎡)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인 가구 +10%p 가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2인가구(+10%)</th>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td> <td>3,875,496원 이하</td> <td>4,492,996원 이하</td> <td>5,040,566원 이하</td> <td>5,128,250원 이하</td> <td>5,445,878원 이하</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2인가구(+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875,49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가구원수	2인가구(+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875,49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5,445,878원 이하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u>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u> 의함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주거약자)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비고
	전용면적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이하)	➔ 거주지 순위 ➔	배점합산
	전용면적 50㎡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2인 80% 이하)	➔ 주택청약 종합저축 순위 ➔	배점합산
	배점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 가족수 (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3인이상	2인	1인
	②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사회취약계층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자에 한함) 전원에 해당]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60회이상	48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이상 48회 미만	
⑤ 장애인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자에 한함) 전원에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⑥ 감점 산정기준 : 2011.11.04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계약한 사람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 점 점 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단, "①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②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①+②를 동시에 만족해야 함.)				
- ③사회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수급자를 말함				
- ③사회취약계층의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 생계·의료급여이외의 수급자는 동법 7조의 이외 수급자를 말함				
- 상기 가점기준표 중 ①부양가족수, ②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⑥감점적용 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과 동일함				

6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가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제외)

구 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 기준)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② 부양가족수(태아 포함, 신청자 제외) ※ 하단 부양가족 설명 참조	3인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 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만65세 이상[1957.05.20.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⑤ 미성년[만19세 미만, 2003.05.21.(당일포함)이후 출생] 자녀(태아수 포함)의 수	3자녀이상	2자녀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60회 이상	48회이상 60회미만	36회이상 48회미만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⑧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3점			
⑨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사람 : 3점 (세부내용은 아래의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⑩ 감점 산정기준 : 2011.11.04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계약한 사람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 점 점 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갱신계약은 제외)			
※ 단, “①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②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①+②를 동시에 만족해야 함.)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주민등록표 초본 상 전입일 및 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상계장암지구 1,2단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까지 모두 서울시로 보아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으로 점수 인정하며, 상계장암지구 3,4단지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서울시 거주기간으로 산정함
- **부양가족**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제외한 자격검증대상)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 단, 만19세 미만[2003.05.21.이후 출생(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2.05.20.이전 출생(당일포함)]인 사람에 한함.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로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어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 이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도 주택소유 조회 대상이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확인** : ①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②사업자등록증상 업태, ③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에 '제조업' 기재 여부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아래 항목 중 1개 항목만 인정)**

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자에 한함) 전원에 해당)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1~4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동일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하는 사람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또는 동법 7조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계약자)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유의사항

임신 중인 자녀(임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상기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7 신청접수 일정

■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접수일정	접수방법
○ 공급(일반, 주거약자) 선순위 - 50㎡미만(29㎡, 39㎡,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 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 - 50㎡이상(59㎡)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022.05.30.(월) 10:00 ~ 2022.06.03.(금) 17:00 ※ 06.01.(수) 공휴일 신청불가	인터넷청약 : www.i-sh.co.kr/app
	2022.06.02.(목)~ 06.03.(금) 10:00 ~ 17:00	방문청약 : 세텍(SETEC) 제3전시실 (학여울역 1번출구) : 신청자치구 별 접수일 상이(하단참조)
○ 공급(일반, 주거약자) 후순위 - 50㎡미만(29㎡, 39㎡,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 - 50㎡이상(59㎡)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미 가입자 포함) (※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6.16.(목) 10:00 ~ 17:00	인터넷청약 : www.i-sh.co.kr/app

※ 방문접수 시 반드시 아래 신청단지 자치구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6.02. (목) :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 2022.06.03. (금) :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의정부시 내 단지]

※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8

신청접수 안내

■ 인터넷 청약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가지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본 청약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선순위 : 2022.05.30.(월) 10:00 ~ 06.03.(금) 17:00

※ 06.01.(수)는 공휴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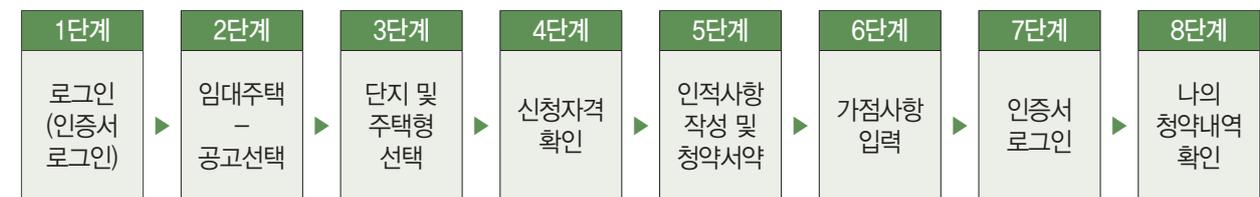
- 후순위 : 2022.06.16.(목) 10:00 ~ 17:00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6월 16일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청약접수일 오전9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가지 발급/소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청약 안내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신청(<https://www.i-sh.co.kr/app>)이 원칙입니다.**

- 본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은 인터넷/모바일청약이 원칙이므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시 과도한 청약신청 인원으로 인해 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공동인증서 및 네이버 인증서로 청약 가능)를 활용하여 주시고 방문접수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격

[선순위 조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 (1인 70%, 2인 60% 이하)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소득 조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 (1인 70%, 2인 60% 이하)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 (2인 80% 이하)
- ※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4.신청자격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기간 : 2022.06.02.(목) ~ 2022.06.03.(금) 10:00 ~ 17:00

2022.06.02. (목) :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2022.06.03. (금) :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의정부시 내 단지]
반드시 신청 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장소 : **세텍(SETEC) 제3전시실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방문접수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대상자들을 위한 신청대행이며,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상담서비스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지참하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등을 반드시 사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차** :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 가능
- **부양가족수** : (본인제외)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 접수 후, 유선 등의 방법으로 단지주택행가점사항 등 본인이 기입한 내역에 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장내 혼잡을 막기 위해 청약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차장은 대기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은 공사에서 일괄 조회하므로 순위확인서 제출 불요
- **인터넷·모바일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가능)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PC로 청약한 건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을 PC로 취소 후 재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자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격, 청약은행, 청약인정횟수, 신청순위, 월평균소득, 배점세부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같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2014년 7월 25일, 2015년 12월 14일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2년 1월 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예시1-2)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주민등록표 초본 상 전입일 및 변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또는 전출한 경우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9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안내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집세대수의 **상위 200%~400%내외(세부비율 하단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5.20.)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2.07.05.(화) 15: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에서“서류심사대상자”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서류심사대상자”조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2.07.13.(수) ~ 2022.07.15.(금)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2022.07.1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국민임대주택 담당자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5.20.)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일반공급(재공급단지)**
 - 기본기준 : 모집세대수의 200% 내외
 -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 모집세대수의 300% 내외
 - 모집세대수가 5호 이하인 경우 : 모집세대수의 400% 내외
- ※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인 경우 전원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10 심사서류 제출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5.20.)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비고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대상자 전원 성명 정자 작성 또는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①만65세 이상 노부모부양 가점, ②사회취약계층 가점 중 “노부모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서명) 받아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동인증서로 동의 시 원본미제출 가능하나 스캔으로 올릴 시 반드시 원본제출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고	발급처
가족관계증명서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 본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민센터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예비가구구성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이상~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증빙서류(대상자만 제출)

주거약자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대상자만 제출)

가점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의(노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② 중소기업업체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제조업체가입분)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불가 시 점수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 해당직장 • 중소기업벤처기업부(☎1357)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minfo.mss.go.kr) • 등기소
③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공제부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제출서류 없음 (공사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직접 의뢰하여 가점가능여부 공문회신 예정)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구청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 주민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추천서(자치구 확인)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의 장 • 해당구청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복지대상 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건강보험공단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증빙서류	• 해당기관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⑥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책정기간 기재)	• 건강보험공단
⑦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계약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	• 본인
⑧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가점대상 확인서류제출 기간 이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여부확인을 위하여 자산소명 기간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일부 서류의 경우 발급과정에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 작성 양식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심사 제출 서류 중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예시) 3곳((1),(2),(3)) 모두 신청인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해당(성명 정자 작성 또는 인감증명서 상 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2)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3)	작성예시
신청자 본인	홍길동	12345678901234567890	홍길동	홍길동	○
	홍길동	12345678901234567890	인감도장 찍기	인감도장 찍기	○
	홍길동	12345678901234567890	HONG	HONG	×
	홍길동	12345678901234567890	홍	홍	×
배우자	김가나	12345678901234567890	김가나	김가나	○
자녀	홍다라	12345678901234567890	홍다라	홍다라	○
·		12345678901234567890			
·		12345678901234567890			

- 우편 제출 시 오류 제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오류 제출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초과는 미제출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또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 재공급 단지는 **3. 공급현황** 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선발인원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 퇴거 등 공가 상황 변동에 따라 명시된 인원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이때 예비자 공급은 상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약 2개월 주기의 예비당첨자 발표를 통해 공급합니다. (**예비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 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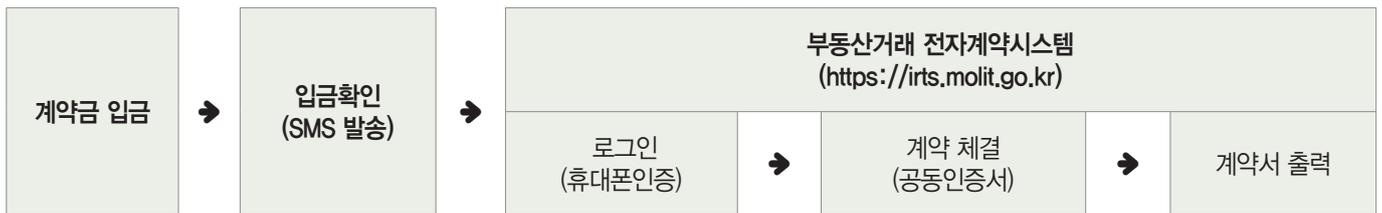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22.11.11.(금) 15: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3456)
- ※ 당첨자 발표 게시 전 조회 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당첨자 발표 이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ARS조회 시 반드시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조회 시 조회되지 않음)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신청 시의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 공급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12 계약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 계약일시 : 2022.11.28.(월) ~ 2022.12.02.(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온라인전자계약 및 방문계약(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온라인 및 방문계약 일정 계약대상자에게 별도 안내예정

■ 온라인 전자계약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①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및 ②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서 구성완료 문자, 즉 2번의 문자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로 내방하여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방문계약 안내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계약 구비서류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대리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계약자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①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도장(또는 서명 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위임장(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①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③ 위임장(공사 양식) ④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40㎡초과 임대주택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미만인 주택도 단독세대로 신청 가능)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p>*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 rowspan="2" style="width: 30%;">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 style="width: 70%;">할증비율</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d3d3d3;"> <th style="width: 35%;">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 <th style="width: 35%;">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초과 30%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초과 50%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f0d0d0;">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중복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p>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p>당첨 및 계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가점관련 서류, 심사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 세대구성, 서울시 계속거주, 자산 및 자동차조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발표 이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로 인정받아 당첨자(예비자)가 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 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 조치함)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따릅니다.

14 단지별 상세주소 및 난방구조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공급되는 모든 단지에 대하여 **전자팸플릿**을 공개하오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정보’ 클릭 후 메뉴상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공가 공급단지에 대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현장 주변여건을 확인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상세 주소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서울특별시)	난방방식	
강남구	세곡2지구	세곡2지구 3단지	강남구 밤고개로21길 25	개별난방	
		세곡2지구 4단지	강남구 자곡로 260		
		세곡2지구 6단지	강남구 밤고개로26길 50		
	세곡지구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00	개별난방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0		
		세곡리엔파크3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1		
		세곡리엔파크4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88		
강남대시앙파크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리버파크1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25	지역난방	
		강일리버파크2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7길 68		
		강일리버파크3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0		
		강일리버파크4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7길 19		
		강일리버파크5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7길 20		
		강일리버파크6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4길		
		강일리버파크7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8길 25		
		강일리버파크8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4길 72		
		강일리버파크9단지	강동구 고덕로97길 29		
		강일리버파크10단지	강동구 고덕로97길 20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1단지	강동구 상일로 152	지역난방	
		고덕리엔파크2단지	강동구 고덕로 427		
		고덕리엔파크3단지	강동구 상일로 74		
	고덕강일2지구	강동리버스트4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110	지역난방	
		강동리버스트6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77		
		강동리버스트7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70		
		강동리버스트8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나길 88		
	고덕강일3지구	강동리엔파크9단지	강동구 고덕로98길 29	지역난방	
		강동리엔파크14단지	강동구 고덕로98길 160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엠밸리1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31	지역난방
			마곡엠밸리2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46	
마곡엠밸리3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32		
마곡엠밸리4단지			강서구 마곡서로 175		
마곡엠밸리5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11-11		
마곡엠밸리6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엠밸리7단지			강서구 마곡서로 133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서울특별시)	난방방식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엠밸리8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81	지역난방
		마곡엠밸리10단지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밸리11단지	강서구 공향대로 124	
		마곡엠밸리12단지	강서구 공향대로 140	
		마곡엠밸리14단지	강서구 마곡중앙로 33	
		마곡엠밸리15단지	강서구 마곡중앙로 36	
	마곡지구 9단지	마곡지구 9단지	강서구 공향대로 103	지역난방
	발산지구	마곡수명산파크1단지	강서구 강서로47길 108	지역난방
		마곡수명산파크2단지	강서구 강서로47길 158	
		마곡수명산파크3단지	강서구 수명로1길 110	
마곡수명산파크4단지		강서구 수명로1길 16		
마곡수명산파크5단지		강서구 수명로2길 105		
마곡수명산파크6단지		강서구 수명로2길 63		
마곡수명산파크7단지		강서구 수명로2가길 22		
구로구	천왕지구	천왕이펜하우스1단지	구로구 천왕로 91	개별난방
		천왕이펜하우스2단지	구로구 천왕로 92	
		천왕이펜하우스3단지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펜하우스4단지	구로구 천왕로 29	
		천왕이펜하우스5단지	구로구 천왕로 10	
		천왕이펜하우스6단지	구로구 천왕로 9	
	천왕2지구	천왕연지타운1단지	구로구 오류로 30	개별난방
		천왕연지타운2단지	구로구 오리로 1102-10	
	항동지구	항동하버라인2단지	구로구 연동로 234	지역난방
		항동하버라인3단지	구로구 항동로 43	
항동하버라인4단지		구로구 항동로 72		
항동하버라인8단지		구로구 서해안로 2036		
노원구	중계센트럴파크	중계센트럴파크	노원구 덕릉로70가길 21	지역난방
	상계장암지구 (3,4단지)	수락리버시티3단지	노원구 누원로 28	지역난방
		수락리버시티4단지	노원구 누원로 18	
마포구	상암3-8단지	상암3-8단지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2	지역난방
	상암2지구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지역난방
		상암월드컵파크 10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6	
		상암월드컵파크 11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7	
		상암월드컵파크 12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7	
서초구	서초포레스타2단지	서초포레스타2단지	서초구 현릉로8길 45	개별난방
	서초포레스타6단지	서초포레스타6단지	서초구 청계산로9길 1-12	개별난방
	우면2지구	서초네이처힐2단지	서초구 형촌길 15	개별난방
		서초네이처힐3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60	
		서초네이처힐4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65	
		서초네이처힐5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5	
		서초네이처힐6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30	
		서초네이처힐7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10	
우면2지구 다세대주택	서초네이처힐가든	서초구 형촌길 60	개별난방	
성북구	장월1	장월1	성북구 한천로101길 54	개별난방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서울특별시)	난방방식
송파구	마천지구	송파파크데일1단지	송파구 성내천로37길 37	개별난방
		송파파크데일2단지	송파구 성내천로47길 38	
	오금지구	송파레미니스1단지	송파구 성내천로 6	개별난방
		송파레미니스2단지	송파구 동남로 341	
	위례포레샤인 13단지	위례포레샤인13단지	송파구 위례서이로 25	지역난방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위례포레샤인23단지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지역난방
	장지지구	송파파인타운2단지	송파구 충민로 151	개별난방
		송파파인타운4단지	송파구 새말로12길 16	
		송파파인타운5단지	송파구 충민로4길 5	
		송파파인타운6단지	송파구 충민로6길 14	
		송파파인타운7단지	송파구 충민로4길 19	
송파파인타운8단지		송파구 충민로4길 6		
송파파인타운9단지		송파구 송파대로8길 17		
송파파인타운10단지		송파구 송파대로8길 20		
송파파인타운11단지	송파구 송파대로8길 58			
양천구	신정3지구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99	지역난방
		신정이펜하우스2단지	양천구 신정이펜2로 55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50	
		신정이펜하우스4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51	
		신정이펜하우스5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27	
신정4지구 보급자리주택	신정4지구 보급자리주택	양천구 신정로 110	지역난방	
은평구	은평1지구	상림마을6-1	은평구 진관4로 78-7	지역난방
		상림마을6-2	은평구 진관4로 100	
		상림마을6-3	은평구 진관4로 107	
		상림마을6-4	은평구 진관4로 87	
		상림마을7-1	은평구 진관4로 78-8	
		상림마을7-2	은평구 진관4로 77	
		상림마을7-3	은평구 진관4로 47	
		상림마을7-4	은평구 진관4로 48-17	
		상림마을7-5	은평구 진관4로 48-8	
		상림마을8-1	은평구 진관4로 37	
		상림마을8-2	은평구 진관4로 17	
	상림마을8-3	은평구 진관3로 70		
	은평2지구	박석고개1-3	은평구 진관1로 21-10	지역난방
		마고정3-2	은평구 진관2로 90	
		마고정3-3	은평구 진관2로 60	
		우물골2-1	은평구 진관2로 67	
		우물골2-2	은평구 진관2로 77	
	은평3지구	구파발9-1	은평구 진관3로 67	지역난방
		구파발10-3	은평구 북한산로 2	
중랑구	신내데시앙	신내데시앙	중랑구 용마산로 669	지역난방
	신내3지구	신내우디안1단지	중랑구 신내역로1길 85	개별난방
신내데시앙포레		중랑구 신내역로 165		
의정부시	상계장암지구 (1,2단지)	수락리버시티1단지	의정부시 누원로 51	지역난방
		수락리버시티2단지	의정부시 누원로 52	

15 단지별 유의사항

- 단지별 유의 사항(공통) -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하천, 어린이공원, 도서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공공시설의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음.
- 팸플릿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대피 공간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정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선헬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 타입이라도 축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더 클 수 있음.
- 세대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불규칙 및 과도하게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 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차단기와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저층세대 및 인접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송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홍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 상의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음.
- 발코니 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히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 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시스템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게 환기시키기 위해) 실외기 하부에 높이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도해양부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사용승인 후 입주민은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레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어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어 굴절구간이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고저차 해소 및 녹지 공간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 출입구(차량, 보행로), 어린이 놀이터, 지하층 및 1층 공동현관 출입구(옥상출입구 포함), 텃밭,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무인 택배함, 쓰레기수거장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 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부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외관 미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복도 천장하부 및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 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지붕 층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승강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관미관 저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주차 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중계용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세대의 전기, 급수, 급탕, 난방, 가스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임.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비용이 발생함.

2022.05.20.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별표2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구분		산정방법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마이니스트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 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⑤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1개 사업장으로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